

法律 第 4528 號

工業標準化法改正法律案

工業標準化法을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産業標準化法

第 1 條(目的) 이 法은 적정하고 합리적인 産業標準을 制定·普及함으로써 鑛工業品의 品質高度化 및 同製品 관련 서비스의 향상, 生産効率의 향상, 生産技術 革新을 기하며 去來의 單純·公正化 및 消費의 합리화를 도모함을 目的으로 한다.

第 2 條(定義) 이 法에서 “産業標準化”라 함은 다음 各 號의 사항을 統一하고 單純化하는 것을 말하며, “産業標準”이라 함은 産業標準化를 위한 기준을 말한다.

1. 鑛工業品の 종류·形狀·치수·裝備·品質·等級·成分·性能·機能·耐久度·安全度
2. 鑛工業品の 生産方法·設計方法·製圖方法·使用方法·運用方法·原單位 生産에 관한 作業方法·安全條件
3. 鑛工業品の 포장의 종류·形狀·치수·構造·性能·等級·포장방법
4. 鑛工業品 또는 鑛工業品の 활용과 관련되는 試驗·分析·鑑定·檢査·檢定·測定方法
5. 鑛工業의 技術과 관련되는 用語·略語·記號·符號·標準數 또는 單位
6. 構築物 기타 工作物의 設計·施工方法 또는 安全條件

第 3 條(産業標準審議會) ① 工業振興廳에 産業標準審議會(이하 “審議會”라 한다)를 둔다.

② 審議會는 産業標準의 制定·改正·확인 및 廢止에 關於하여 필요한 사항을 調查·審議하고 關係行政機關의 長의 諮問에 응하며 필요한 사항에 關於하여 建議할 수 있다.

③ 審議會의 구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定한다.

第 4 條(産業標準의 制定등) 工業振興廳長이 産業標準을 制定·改正·확인 또는 廢止하고자 할 때에는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第 5 條(産業標準의 制定등의 申請) 産業標準의 制定 또는 改正에 關於하여 利害關係가 있는 者는 大統領令이 定하는 바에 의하여 産業標準案을 작성하여 工業振興廳長에게 그 制定 또는 改正을 하여 줄 것을 申請할 수 있다.

第 6 條(審議會의 회부등) ① 工業振興廳長은 第 5 條의 規定에 의한 申請을 받은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審議會에 회부하여야 한다.

② 審議會는 第 1 項의 規定에 의하여 회부된 申請을 지체없이 審議하고 그 結果를 工業振興廳長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工業振興廳長은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通보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申請에

대한 決定을 하고 그 뜻을 申請人에게 통지 하여야 한다.

第7條(産業標準의 확인·改正 또는 廢止)

① 工業振興廳長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制定한 産業標準에 대하여 그 制定한 날부터 5年마다 適否를 확인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産業標準을 改正 또는 廢止할 수 있다.

② 工業振興廳長은 國際標準의 制定 또는 改正이나 産業技術의 향상등으로 産業標準의 改正 또는 廢止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5年 이내라도 이를 改正 또는 廢止할 수 있다.

第8條(公聽會) ① 工業振興廳長은 産業標準의 制定·改正 또는 廢止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公聽會를 開催하고 利害關係가 있는 者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② 産業標準 및 産業標準化에 관하여 利害關係가 있는 者는 書面으로 工業振興廳長에게 公聽會의 開催를 요구할 수 있다.

③ 工業振興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의한 요구가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체없이 公聽會를 開催하여야 한다.

第9條(産業標準의 告示) 工業振興廳長은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産業標準을 制定·改正·廢止한 때 또는 第7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확인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告示하여야 한다.

第10條(韓國産業規格) ① 第4條의 規定에 의하여 制定된 産業標準을 韓國産業規格(이하 “規格”이라 한다)이라 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規格이 아니면 韓國産業規格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없다.

第11條(製品의 規格表示의 許可등) ① 工業振興廳長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지정한 鑛工業品의 品目(이하 “指定品目”이라 한다)의 製品을 製造하는 者는 당해 指定品目の 製品을 製造하는 工場 또는 事業場(이하 “工場”이라 한다)마다 工業振興廳長의 許可를 받아 그

製造하는 製品·포장 또는 容器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製品이 規格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製造業者가 아니면 製品·포장·容器 또는 宣傳을 위한 印刷物에 당해 製品이 規格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規格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製品등을 그 情을 알고 販賣하거나 販賣를 위한 陳列·보관 또는 運搬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2條(加工技術의 規格表示의 許可등) ①

工業振興廳長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 지정한 鑛工業品의 加工技術의 種目(이하 “指定加工技術”이라 한다)을 사용하는 者는 工場마다 工業振興廳長의 許可를 받아 당해 指定加工技術에 의하여 製造된 製品이나 그 포장·容器 또는 送狀에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指定加工技術이 規格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使用者가 아니면 製品·포장·容器·送狀 또는 宣傳을 위한 印刷物에 당해 指定加工技術이 規格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規格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製品등을 그 情을 알고 販賣하거나 販賣를 위한 陳列·보관 또는 運搬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第13條(外國製品등의 規格表示의 승인) ①

外國에서 指定品目の 製品을 製造하거나 指定加工技術을 사용하는 者는 工場마다 工業振興廳長의 승인을 얻어 그 指定品目 또는 指定加工技術이 規格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 의 요건·節次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第14條(輸入 등의 금지) ① 輸入業者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規格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 또는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指定品目の 製品 또는 指定加工技術을 사용한 製品(그 포장·容器·送狀에 대해 표시를 한 경우를 포함한다)을 輸入하거나 販賣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工業振興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해 輸入業者에 대하여 그 指定品目の 製品 또는 指定加工技術을 사용한 製品の 販賣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第15條(表示命令) ① 工業振興廳長은 第11條第1項 또는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표시를 촉진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指定品目の 製品을 製造하거나 指定加工技術을 사용하는 者에게 당해 指定品目 또는 指定加工技術이 規格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명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이 있는 경우에는 規格을 표시하지 아니한 指定品目の 製品 또는 指定加工技術을 사용한 製品은 이를 製造·輸入 또는 販賣하거나 販賣를 위한 陳列·보관 또는 運搬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工業振興廳長은 第2項의 規定에 위반한 指定品目の 製品 또는 指定加工技術을 사용한 製品에 대하여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당해 指定品目の 製品 또는 指定加工技術을 사용한 製品の 製造業者·輸入業者 또는 販賣業者에게 그 과기 또는 收去를 명할 수 있다.

第16條(鑛工業品 및 그 部品の 統一·單純化) ① 工業振興廳長은 主要 鑛工業品の 産業標準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主要 鑛工業品 및 그 部品 또는 素材의 製造業者(加工業者 및 組立業者를 포함한다)에게 그 鑛工業品·部品 및 素材의 사용, 規格統一 또는 單純化를 위하여 品目·種目 또는 規格의 지정 등 필요한 命令을 할 수 있다.

② 工業振興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

第17條(承繼) ① 第11條第1項 및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 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者가 工場의 전부를 讓渡하거나 死亡할 때와 合併이 있는 때에는 그 工場을 讓受받은 者, 相續人 또는 合併後 存續하는 法人이나 合併에 의하여 新設된 法人은 그 許可 또는 승인을 얻은 者의 地位를 承繼한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승인을 얻은 者의 地位를 承繼한 者는 商工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사실을 工業振興廳長에게 申告하여야 한다.

第18條(審査) ① 工業振興廳長은 第11條第1項 및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하고자 할 때에는 그 指定品目の 製品 또는 指定加工技術을 사용한 製品の 製造設備, 檢查設備, 檢查方法, 品質管理方法 기타 品質保證에 필요한 技術的 生産條件을 審査하여야 한다.

② 工業振興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위한 審査의 경우를 제외한다)를 하고자 할 때에는 技術的 生産條件의 審査를 주된 業務로 하는 法人 또는 團體중 工業振興廳長의 지정을 받은 者(이하 “標準化能力評價機關”이라 한다)로 하여금 審査하게 할 수 있다.

③ 第2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化能力評價機關의 지정 기준·指定取消要件 및 指定申請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商工資源部令으로 정한다.

④ 工業振興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審査를 거쳐 第11條第1項 및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申請人에게 통지하고 당해 指定品目과 그 製造業者 또는 당해 指定加工技術과 그 使用者의 姓名 또는 명칭을 公告하여야 한다.

第19條(手數料等) ① 第11條第1項 및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고자 하는 者는 商工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手數料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工業振興廳長이 第1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標準化能力評價機關이 審査를 하게 한 때에는 그 審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商工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審査에 필요한 費用등을 標準化能力評價機關에 납부하여야 한다.

第20條(文書의 비치 및 보고) 工業振興廳長은 이 法의 施行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商工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1條第1項 및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者에게 그 業務에 관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文書를 비치하도록 할 수 있다.

第21條(異議申請) ① 第11條第1項·第12條第1項 및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規格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를 한 指定品目の 製品 또는 指定加工技術을 사용한 製品이 그 規格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者는 工業振興廳長에게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 第1項 및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商工資源部令으로 정한다.

第22條(檢査) ① 工業振興廳長은 第11條第1項 및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第13條第1項 및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製造業者 또는 指定加工技術 使用者의 製品·原資材 또는 技術의 生産條件을 檢査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의 方法·節次·條件등은 工業振興廳長이 정하여 告示한다.

③ 工業振興廳長은 第1項의 경우에 製造業者 또는 指定加工技術 使用者로 하여금 檢査에 필요한 最少量의 試料를 無償으로 제공하게 할 수 있다.

④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행하는 公務員은 그 權限을 나타내는 證票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第23條(標準化能力評價機關에 의한 檢査)

① 工業振興廳長은 指定品目 또는 指定加工技術에 대하여 第11條第1項 및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製造業者 또는 指定加工技術 使用者의 品質維持狀況 등으로 보아 規格에 맞도록 하기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商工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標準化能力評價機關에서 해당 製造業者 또는 指定加工技術 使用者의 製品 또는 技術의 生産條件에 대하여 檢査를 받도록 명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받고자 하는 者는 商工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標準化能力評價機關이 工業振興廳長의 認可를 받아 정하는 手數料등을 標準化能力評價機關에 납부하여야 한다.

③ 第22條第3項의 規定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에 이를 準用한다.

第24條(市販品調査) 工業振興廳長은 流通過程에서의 規格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표시가 있는 製品의 品質水準維持와 消費者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販賣되고 있는 規格表示品중 消費財 또는 安全 및 衛生관련 製品의 品質에 관한 試驗(이하 “市販品調査”라 한다)을 할 수 있다.

第25條(표시제거등의 처분) ① 工業振興廳長은 第22條第1項 및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市販品調査를 실시한 결과 그 指定品目の 製品 또는 指定加工技術이 표시된 製品이 規格에 맞지 아니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표시의 제거·표시의 정지 또는 販賣의 정지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工業振興廳長은 第17條第2項·第20條·第22條第3項·第23條第3項 또는 第37條의 規定에 위반한 者에 대하여도 第1項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할 수 있다.

第26條(許可 또는 승인의 取消) 工業振興廳長은 第11條第1項 및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 또는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製造業者 또는 指定加工技術의 使用者가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許可 또는 승인을 取消할 수 있다.

1. 第22條第1項 및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 또는 第24條의 規定에 의한 市販品調査의 결과 規格에 현저히 맞지 아니한 때
2. 第2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命命을 정당한 사유없이 위반하여 檢査를 받지 아니한 때
3.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표시제거등의 처분에 정당한 사유없이 따르지 아니한 때

第27條(聽聞) 工業振興廳長은 第25條 또는 第26條의 規定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그 처분의 相對方 또는 代理人에게 의견을 陳述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처분의 相對方 또는 代理人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住所不明 등으로 意見陳述의 기회를 줄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第28條(團體標準의 승인등) ① 工業振興廳長은 産業標準化를 촉진하기 위하여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産業標準化와 관련된 團體

가 그 構成員의 共同利益을 도모하고 消費者를 보호하기 위하여 鑛工業品 또는 鑛工業의 技術에 관하여 정한 기준(이하 “團體標準”이라 한다)을 商工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승인할 수 있다.

② 工業振興廳長은 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승인된 團體標準에 맞는 것임을 나타내는 品質認證表示를 商工資源部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第1項의 規定에 의한 團體에게 勸獎할 수 있다.

第29條(韓國標準協會) ① 第11條第1項 및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는 工業振興廳長의 認可를 받아 韓國標準協會(이하 “協會”라 한다)를 設立할 수 있다.

② 協會는 法人으로 한다.

③ 第11條第1項 및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은 者는 協會의 會員이 된다. 다만, 鑛工業品の 製造業者와 産業標準化 및 品質經營에 관한 技術과 知識이 있는 者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協會의 會員이 될 수 있다.

④ 協會는 定款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會員으로부터 會費 또는 手數料를 받을 수 있다.

⑤ 協會의 指導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⑥ 協會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社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30條(協會의 業務) 協會는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1. 規格의 發刊·普及及 規格실시의 촉진
2. 産業標準化에 관한 調査·研究·指導·啓蒙 및 教育
3. 品質經營등 管理技術에 관한 診斷·指導·啓蒙 및 教育
4. 外國規格·國際規格 기타 刊行物の 蒐集 및 普及
5. 國際品質시스템의 調査·研究·認證·教育

6. 기타 工業振興廳長이 委託하는 業務
 第31條(韓國產業標準院) ① 第2條의 規定에 의한 產業標準의 研究·開發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工業振興廳長의 認可를 받아 韓國產業標準院(이하 “標準院”이라 한다)을 設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標準院은 다음 各號의 業務를 행한다.

- 1. 規格案의 研究·開發
- 2. 規格 관련 情報의 調査·分析 및 普及
- 3. 기타 工業振興廳長이 委託하는 業務

③ 第29條第2項·第4項 및 第5項의 規定은 標準院에 각각 이를 準用한다. 이 경우 “協會”는 “標準院”으로 본다.

④ 標準院에 관하여는 이 法에 規定한 것을 제외하고는 民法중 財團法人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第32條(規格遵守)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公共團體의 物資 및 用役의 調達·生産管理 및 施設工事등에 있어서는 이 法의 規定에 의한 規格을 준수하여야 하며 規格이 없는 경우에는 第28條의 規定에 의한 團體標準을 준수하여야 한다.

第33條(表示品の 優先購買) 國家·地方自治團體·政府投資機關 및 公共團體가 物品을 購買하고자 할 때에는 第11條第1項·第12條第1項 및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표시를 한 製品을 우선적으로 購買하여야 한다. 다만, 그 表示製品이 없는 경우에는 第28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品質認證表示를 한 製品을 우선적으로 購買할 수 있다.

第34條(檢査 또는 型式承認등의 免除) 第11條第1項·第12條第1項 및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표시를 한 製品에 대하여는 다음 各號의 檢査·檢定 또는 型式承認을 免除할 수 있다.

- 1. 工產品品質管理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品質檢査
- 2. 中小企業協同組合法 第33條第1項의 規

定에 의한 規格檢査
 3. 電氣用品安全管理法 第9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

4. 에너지利用合理化法 第37條의 規定에 의한 型式承認

5. 産業安全保健法 第35條의 規定에 의한 保護具의 檢定. 다만, 規格이 勞動部長官이 정한 기준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第35條(補助金) 工業振興廳長은 産業標準化를 촉진하는 業務를 행하는 者에게 豫算의 범위안에서 補助金을 교부할 수 있다.

第36條(産業標準化를 위한 財源의 出損) 工業振興廳長은 産業標準化事業 및 團體標準化事業의 촉진과 國際標準化 活動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필요한 財源을 확보하기 위하여 民間에게 協會 또는 標準院에 의 出損을 勸奨할 수 있다.

第37條(品質管理擔當者의 지정) 第11條第1項 및 第12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許可를 받고자 하는 者는 工業振興廳長이 정하는 일정한 自格을 갖추거나 教育을 履修한 者중에서 品質管理擔當者를 지정하여야 한다.

第38條(權限의 위임·委託) 工業振興廳長은 이 法에 의한 權限의 일부를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서울特別市長·直轄市長 또는 道知事(이하 “市·道知事”라 한다)와 國立工業技術院長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中央行政機關의 長 기타 工業振興廳長이 정하는 團體의 長에게 委託할 수 있다.

第39條(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 1. 第11條第2項 및 第12條第2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표시를 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者
- 2. 第11條第3項 및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販賣 또는 陳列· 보관· 運搬을 한 者
- 3. 第14條第1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輸入·販賣한 者 또는 同條第2項의 規定에 의

한 命令을 위반한 者

4. 第 15 條第 2 項의 規定에 위반하여 製造 · 輸入 · 販賣 또는 販賣를 위한 陳列 · 보관 · 運搬한 者 또는 同條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5. 第 16 條의 規定에 의한 命令을 위반한 者

6. 第 25 條第 1 項 또는 第 26 條의 規定에 의한 처분에 위반한 者

第 40 條(罰則) 第 22 條第 1 項 또는 第 23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檢査를 거부 · 방해 또는 기피한 者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第 41 條(兩罰規定) 法人의 代表者 또는 法人이나 個人의 代理人, 使用人 기타 從業員이 그 法人 또는 個人의 業務에 관하여 第 39 條 또는 第 40 條의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行爲者를 罰하는 외에 法人 또는 個人에 대하여도 각 해당條의 罰金刑을 科한다.

第 42 條(罰則適用에 있어서의 公務員 擬制) 工業振興廳長이 第 38 條의 規定에 의하여 委託한 事務에 종사하는 團體의 任員 및 職員은 刑法 第 129 條 내지 第 132 條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公務員으로 본다.

第 43 條(過怠料) ①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300萬원 이하의 過怠料에 處한다.

1. 第 20 條의 規定에 의한 文書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文書를 비치하지 아니한 者
2. 第 20 條의 規定에 의한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보고를 한 者

② 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工業振興廳長(第 38 條의 規定에 의하여 그 權限이 市 · 道知事 · 國立工業技術院長 또는 地方工業技術院長에게 위임된 경우에는 市 · 道知事 · 國立工業技術院長 또는 地方工業技術院長을 말하고, 다른 中央行政機關에 委託된 경우에는 中央行政機關의 長을 말한다. 이하 이條에서 같다)이 賦課 · 徵收한다.

③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에 불복이 있는 者는 그 처분의 告知를 받은

날부터 30日이내에 工業振興廳長에게 異議를 제기할 수 있다.

④ 第 2 項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의 처분을 받은 者가 第 3 項의 規定에 의하여 異議를 제기한 때에는 工業振興廳長은 지체없이 官廳 法院에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하며 그 통보를 받은 官廳 法院은 非訟事件節次法에 의한 過怠料의 裁判을 한다.

⑤ 第 3 項의 規定에 의한 기간내에 異議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過怠料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國稅 또는 地方稅滯納處分의 예에 의하여 이를 徵收한다.

附 則

第 1 條I(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부터 施行한다.

第 2 條(工業標準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工業標準은 이 法의 規定에 의한 産業標準으로 본다.

第 3 條(韓國工業規格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韓國工業規格은 이 法 第 10 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으로 본다.

第 4 條(韓國工業規格의 表示許可등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工業規格의 表示許可 또는 승인을 얻은 者는 이 法 第 11 條第 1 項 및 第 12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表示許可 또는 第 13 條第 1 項의 規定에 의한 승인을 얻은 者로 본다.

第 5 條(韓國工業標準協會에 관한 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韓國工業標準協會는 이 法 第 29 條의 規定에 의하여 設立된 韓國標準協會로 본다. 다만, 이 法 施行日부터 6月이내에 定款을 변경하여 工業振興廳長의 認可를 받아야 한다.

第 6 條(韓國産業標準院에 관한 經過措置)

① 이 법 施行당시의 社團法人 情報產業標準院(이하 “法人”이라 한다)은 그 總會의 議決을 거쳐 그 모든 權利 및 義務를 이 법에 의하여 設立되는 標準院이 承繼하도록 工業振興廳長에게 이에 관한 승인을 申請할 수 있다.

② 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請에 의하여 승인을 얻은 標準院은 이 법에 의한 標準院의 設立과 동시에 民法중 法人의 解散 및 清算에 관한 規定에 불구하고 解散된 것으로 보며, 그 標準院에 속하고 있던 모든 權利 및 義務는 이 법에 의하여 設立되는 標準院이 承繼한다.

第7條(品質管理擔當者의 지정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品質管理擔當者는 이 법 第37條의 規定에 의하여 지정된 品質管理擔當者로 본다.

第8條(표시정지등의 처분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당시 종전의 規定에 의한 표시의 정지·販賣의 정지의 처분은 이 법 第25條의 規定에 의한 표시의 정지·販賣의 정지의 처분으로 본다.

第9條(罰則에 관한 經過措置) 이 법 施行전의 行위에 대한 罰則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規定에 의한다.

第10條(다른 法律의 改正) ① 電氣通信基本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9條第1項중 “工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工業規格”을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으로 한다.

② 電算網普及擴張과 利用促進에 관한 法律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14條의 2 第1項중 “工業標準化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工業規格”을 “産業標準化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으로 한다.

③ 電波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28條의 2第1項 및 第29條의 5 第1項 第1號중 “工業標準化法 第14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工業規格 및 工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工業規格 표시”를 각각 “産業標準化法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韓國産業規格 및 産業標準化法에 의한 韓國産業規格 표시”로 한다.

④ 電氣用品安全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第1項第3號·第9條第3項第3號·第9條의 3第1項第3號 및 第9條의 4第2號중 “工業標準化法 第15條第1項 및 第15條의 3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製品이 韓國工業規格”을 각각 “産業標準化法 第11條第1項 및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그 製品이 韓國産業規格”으로 한다. ⑤ 工產品品質管理法중 다음과 같이 改正한다.

第9條중 “工業標準化法 第15條 및 第15條의 2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工業規格의 표시”를 각각 “産業標準化法 第11條 및 第12條의 規定에 의하여 韓國産業規格의 표시”로 한다.

第11條(다른 法律과의 관계) 이 법 施行당시 다른 法律에서 종전의 工業標準化法の 規定을 인용한 경우에 이 법중 그에 해당하는 規定이 있는 때에는 종전의 規定에 같음하여 이 법의 해당 條項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